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산업형] 협업체 모집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산업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25년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분	산업형
사업목적	대기업 등 민간역량 활용 동·이업종 간 협업, 수출 등 지원
지원내용	업종 간 협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 생산·제품개발·마케팅 등 공동사업 지원
선정규모 (협업체)	5개 내외
사업비 (자부담)	국고보조금 최대 2억원 * 자부담 20% 이상(자부담의 경우 현물대체 가능)

*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구성체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구분	산업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www.sbiz24.kr, 소상공인24)
공고기한	'25. 4. 11.(금) ~ 5. 2.(금), 16:00까지
신청기간	'25. 4. 21.(월) ~ 5. 2.(금), 16:00까지

문의처

구분	문의처	전화번호	e-mail
시스템관련	소상공인24	1644-5302	
접수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골목형상점가육성팀	042-363-7922,7926,7928	coop@semas.or.kr
일반문의	전문기관 (엔피프틴파트너스)	070-4215-8478	info@n15partners.com

가. 모집개요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동·이업종 산업 간 협업모델 실행 지원으로 성과 창출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5. 11. 30.

* 추후 운영 일정에 따라 사업 기간 및 협약완료일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선정규모 : 총 5개 협업체 내외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그 중 50%가 소상공인인 협업 추진주체(협업체)

- (협업요건) 아래의 두가지 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

* 사업 참여 협업체의 구성원 전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산업형 지원대상 >

신청유형	내용
① 소상공인 협업체	- 동종 소상공인 또는 동·이(異)업종 소상공인 간 협업체 구성(5인 이상), 공동 마케팅 등 추진
② 대·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체	- 유통, 물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소상공인과 상생 협업을 구성하여 대기업 노하우 등 전파로 경쟁력 강화

지원예산(국비 기준, 자부담과 부가가치세(vat)는 협업체 부담)

- (산업형 협업) 최대 2억원 이내(자부담 20% 이상)

* 사업비(100%) 편성예시 : 국고보조금 2억원(80%) + 자부담금 5천만원(20%)

** 자부담 20% 이상에 대해 현물 인정(현물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현물인건비 인정범위 : 신청유형 ① 사업을 신청하는 대표 소상공인 참여 고용인력 한정, 신청유형 ② 협업 대·중소기업의 인력 및 사업을 신청하는 대표 소상공인 참여 고용인력 한정

□ 지원내용

1 산업형 협업지원

- (초기 협업지원) 협업 아이디어 개발비, 컨설팅비 등 지원
- (협업 실행지원) 동업종 또는 동·이업종 간 협업을 실현할 공동장비 임차비, 신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
- (협업 확산지원) 대·중소기업 보유 국내·외 유통 채널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 전략적 협업 및 수출과정 전반 지원 등
- (기타) 공정개선, 생산관리 등 업종 간 협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협업 사업화지원

- 동종 및 동종+이업종 산업간 협업을 위한 공동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반 비용지원

<사업화자금 지원항목>

비목	항목	상세내역
일반용역비	제품개발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네트워크	• 온라인 판매페이지, 시스템 등 개발 용역비
	브랜드비	• 패키징,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비	• 마케팅·홍보 용역비, e커머스 서비스 홍보용역비
일반수용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전문가 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임차료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촬영 스튜디오 임차비

나.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5. 4. 11.(금) ~ 5. 2.(금), 16:00까지

□ 신청기간 : '25. 4. 21.(월) ~ 5. 2.(금),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www.sbiz24.kr)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공고문 선택 - 지원신청

◆ **유의사항**

- 1) 협업체 구성원 전체의 회원가입이 필수
- 2)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주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공동대표가 주 사업참여자라면 소상공인24 신청서 상 명시해야 하며 중도에 주 사업 참여자를 변경할 수 없음
- 3)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4)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모바일 불가), 신청기간 중 "임시저장" 클릭 시, 신청서 등 내용 수정·삭제가 가능하나, "신청완료" 클릭 시,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
- 5)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협약서**의 경우 반드시 붙임 신청 서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필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및 별첨자료 전체**

< 신청서류(붙임2 서식 활용) >

구분	제출서류(부수)	제출요령
사업신청 (공고 내 붙임2서식 활용)	① [붙임1] 사업신청서(1부)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www.sbiz24.kr)
	② [붙임2] 사업계획서(1부)	
	③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각 1부(협업체 구성원 전부제출)	
	④ [붙임4] 참여협약서(1부)	
	⑤ [붙임5] 서약서(1부)	
납세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협업체 구성원 전부제출)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참여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① 대표기업(대표자 포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②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50% 이상인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능한 경우>

-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 ③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④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③ 대표기업(대표자 포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 * 단, 위의 경우라도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며, 추후 선정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상권형, 조합형) 신청 협업체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후보 Pool 구축) 서류 평가→발표 평가로, 지원규모의 1.5배수로 수혜 협업체 후보 Pool 구축
- (선정심의 운영) 수혜 협업체 선정심의위*(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운영
 - * 심의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여 후보군을 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 발표평가 적합 협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선정



□ 우대사항(최대 10점)

구 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2점)	협업체 대표가 청년이거나 또는 전체 구성원 중 청년이 50% 이상인 경우 * 청년 : 공고일('25.4.1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5.4.12일 이후 출생자)
여성(2점)	협업체 대표가 여성이거나 또는 구성원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장애인(2점)	협업체 대표가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협업체 구성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BM경진대회(2점)	'23~'2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협동조합이 포함된 경우
백년소상공인(5점)	협업체 구성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5점)	협업체 구성원이 중기부(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중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브랜드 창출

* 가점은 서류평가에만 반영

라. 유의사항

-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부가가치세 VAT(10%)”는 협업체 부담
- 신청 시 대표기업은 반드시 소상공인으로 지정되어야 함
- 본 사업 참여 시 협업체 구성원(소상공인 간) 내부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 불가
 - * 내부거래 예시 : 협업체 구성원 중 광고대행업체(소상공인)가 협업체 또는 다른 협업체 구성원(소상공인)의 홍보·마케팅 과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등
- 협업체에 대한 최종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표기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교부, 정산, 반납, 정보공시 등에 따른 일체 의무이행 필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 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협업체 구성원이 허위 사업장 운영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문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협업체 책임
- 평가 일정 및 결과는 개별 통지(이메일 등)하며, 협업체의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업체는 사업비(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협업체에서 별도 부담*

* 보험료는 사업비 내 편성·집행 불가

별첨1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¹ 중 소상공인²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³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9년 매출액 합계) / 3



☞ 평균매출액등 : (2016년~2018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19년 매출액 합계) / 2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8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19.05.16~'19.12.31 매출액(A) 연환산 (= (A/230일) × 365일)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08.16~'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A/138일) × 184일)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B)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19.07.01~'19.12.31 매출액(A) 연환산 (= (A × 2) or { (A/184일) × 365일 })

'19.10.01
창업
↓

'20.09.30
대출신청
↓

3개월(92일)				6개월(182일)									
2019년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 ① '19.10.01~'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A × 2) or { (A/92일) × 184일 })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B)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 '20.06.02				9일					대출신청 '20.06.10.				
2020년 6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평균매출액등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6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0년 6월에 대출을 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9.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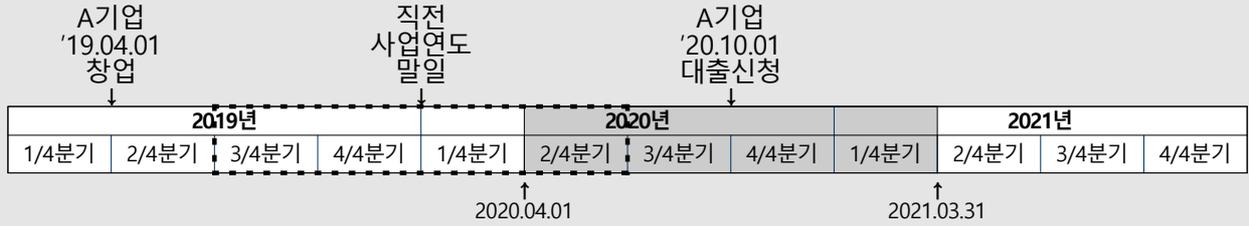


☞ A기업 2020년 09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17년~2019년)의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0년 03월 11일 대출신청 → (2019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16년~2018년)의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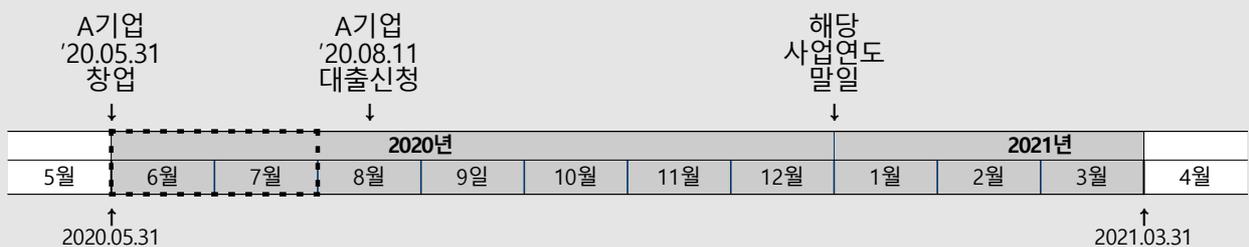


☞ A기업 2020년 10월 01일 대출신청 → 2019년 07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0년 03월 01일 대출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대출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 A기업 2020년 08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0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 2020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5월 3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p align="center">근로자</p>	<p>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p>
<p align="center">임원</p>	<p>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p>
<p align="center">일용 근로자</p>	<p>「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p>
<p align="center">3개월 이내의 근로자</p>	<p>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p>
<p align="center">연구 전담 요원</p>	<p>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p>
<p align="center">단시간 근로자</p>	<p>-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p>

㉓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영리·비영리기업 기준 및 확인방법

□ 영리·비영리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영리법인기업)이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② 계획성·계속성을 가지며 ③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④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함.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임.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립시 교부 받은 법인설립허가증이나 정관 등을 제출받아 설립근거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
- (영리개인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개인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1.4.2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영리·비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 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개인비영리사업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 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법인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 신청불가*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83	국가,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 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외국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등'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
국법인은 소상공인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외국법
인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적용대
상이 아님.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
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기준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이 될 수 있음.

○ (영리법인의 지점)

-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고, 본점 명의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함.

□ 영리·비영리기업 구분

○ 영리기업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업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비영리기업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적용대상이 아님.